

2403

기안자	신공리	전화번호	2-2378	공보	필요	불필요
상징담임	상공파장	산정국장	제1부시장	시	장	
협조자	부	사무	보	존		
시명	부	사무	보	존		
기안일	64. 8. 29	시행일	64. 8. 29	정서	기장	
분류기호		분류서번호		64 829	통서	
경수	유신	참		발신		
세무	회말유 소화필증 취급요령 고시					
<p>(안 1) 상광연 1943.2 ~ 1108 (64. 8. 13) 호 통칙에 의한 당시 소화필증제도 실시를 취유류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한다. 단 본 소화필증제도 실시는 1964. 8. 부터 실시함</p>						
<p>(고시 1) 신공리별시 고시 제 852호</p>						
<p>회말유 소화필증 취급요령</p>						
<p>취유류 운영규정 제 17조 (소화필증반독) 에 의거 부장 회말유 시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화필증 취급 요령을 정하여 이에 고시한다. 나</p>						
<p>관리필하를 변경 강화 한다.</p>						
<p>나 영업종 추가용, 관공 영업종에 대하여 종래와 서 63년 별시</p>						

고시

화시정과법제
 인제
 인제

8 77

같이 실시하되 제차량 배정 기준량은 별지와 같이 책정한다

2. 소화증 발급

가 종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받은 소화증은 이를 폐지하고 직무공사에서 직위투를 각대리점에 판매할시 취발부에 관하여 판매한량에 해당하는 소화증을 동시에 인도한다

나 각대리점은 주선 또는 기타의 실수로 자에게 판매할시 판매한량에 해당하는 소화증을 발급 교부한다

다 각 주선 또는 실수로 자에게 근무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달에 해당하는 소화증을 발급 교부한다

라 우수 영업원은 각 대리점 또는 주선에서 구입 또는 주선마다 발급받은 소화증을 1개월간 집계하여 매 월말 5일까지 (상공과) 제출한다

마 자량, 관용은 각대리점 또는 각 주선에서 구입 또는 주선마다 발급받은 소화증을 1개월간 집계하여 매 월말 5일까지 (상공과) 제출한다

바 (우수) 또는 (관용)은 각 차량 소무자로 부터 제출된 소화증을 검토하여 별첨 기준에 의한 배정량을 소화한 차량에 관하여 취발부 소화필증을 교부한다

공업용 및 일반용에 대하여는 매월 주선마다 받은 소화증을 일개월간 집계하여 (상공과)에 제출한다

아 공업용 및 일반용 투루에 대하여는 소화필증 취급 요령의 세에 준하되 최대한으로 PR하여 부침

유류 사용을 적극 배제하도록 권장한다.

이 각 차량은 (유류와 모든 차량에서 불탑 받은

최발유 소화필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만 운행할수 있으며
경찰관 또는 기타 관제관의 제시에 순응하지 응하여야한다

자 본 소화필증 취급 요령은 1964. 2 월의
실시하여 1964. 1. 27 서울특별시 도시제 36호 ~~서울~~ 최발유
소화필증 취급 요령은 폐지한다.

3. 별첨

별첨 매점량을 소화처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부류 사용량~~
으로 간주하여 최발유 운행차량 제 1조에 ~~이하여 행정조치~~

1964. 2월 29 일
서울특별시장 원 기 영

(참 3)

주신 공보 실장

제부 등전

부경 유류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별첨 요령을 순부
하오니 서울시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일간 신문에 P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차량 소비 기준 (월간)

A. 경유용

- | | |
|----------|--------|
| 1. 택시 | 800 l |
| 2. 합승 | 1200 l |
| 관광합승 | 100 " |
| 세단합승 | 720 " |
| 3. 전세 버스 | 800 " |
| 4. 대형 화물 | 480 " |
| 보통 화물 | 400 " |
| 5. 소형 화물 | 320 " |
| 삼륜차 | 200 " |
| 6. 특수화물 | 300 " |

B. 자가용

- | | |
|---------|-------|
| 1. 세단 | 400 l |
| 쥘차 | 400 " |
| 시발 | 400 " |
| 2. 오토바이 | 300 " |

C. 관용

- | | |
|-------------|-------|
| 1. 장차관용 | 500 l |
| 2. 일반관용차 | 400 " |
| 3. 분소차 | 200 " |
| 4. 일반관용 소형차 | 200 " |

상광연 1343.2 1100

1964. 8. 13.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휘발유 소화증제도보완실시에관한재지시

1. 1964.7.9 상광연 1343.2-896 로 지시한바있는 휘발유 소화증제도 요강중 실시방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변경하여 8 월분부터 실시하니 휘발유 소화증제도 실시에 환전을기할것

가. 종래에 각지방장관이 발급하던 소화증은 이를 폐지하고 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시도판매인에게 판매할시 휘발유에 한하여 판매한량에 해당하는 소화증을 동시에 인도한다.

나. 실수요자 혹은 주유소가 도판매인으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할 때에는 이량에 해당하는 소화증을 받으며 주유소가 각종차량에 급유할 때에도 소화증을 고부하여 데리점이나 혹은 주유소가 소화증을 고부할 때에는 소화증에 고부할적화 주유소 혹은 데리점명 또는 부호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다. 소화증은 유점 모본과같이 일별로 표시되어있고 또한 수량도 표시되어있음.

라. 시도에서 회수된 소화증은 소화증 실시상황보고서 당부에 송부하며

마. 특히 각종 차량(운수영업용, 자가용및 관용)에 대하여는 배정량 전량을 소화한 차량에 대하여는 유점서식과같은 소화필증을 발부하여 익월중 차량에 부착토록한다.

바. 실수요자에게 고부되지않은 소화증은 시도판매인 의월 10일까지 대한석유공사에 제출하여 익월분 소화 증과 교환하여야한다.



당해월 누손량에 해당하는 소화증은 익월 10일까지 대한석유공사에 데리점 책임하에 반환하여야한다.

245.2

1964. 8.13

아. 7월말 재고액 대하여는 소화증을 별도 대한석유
공사에서 고부한다.

자. 8월중에 시도판매인 혹은 주유소가 기어 중전방
식에 의거 발급한 소화필증은 유점소화증과 교환하도록 조치
하여 8월 1일부터 소급실시할것.

2. 본건에 대하여는 1964.8. 5각시도 상공국장회의시 실
시요령을 지시한바 있음.

유첨. 휘발유 소화증표본 1부.

휘발유 소화필증표본 1부. 끝

상공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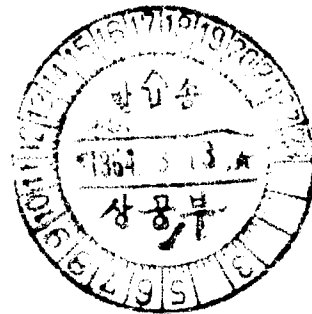
박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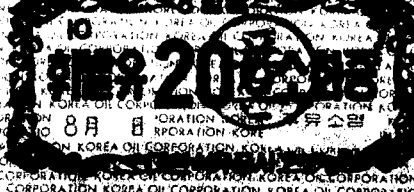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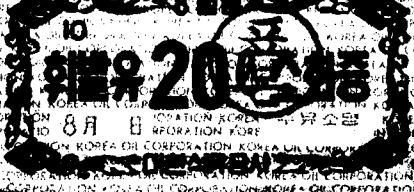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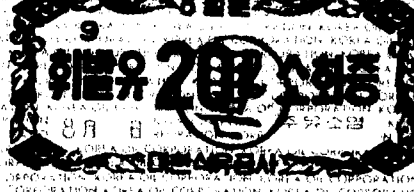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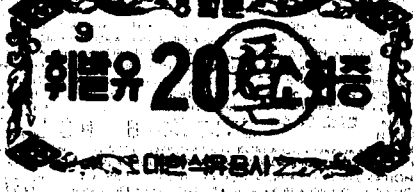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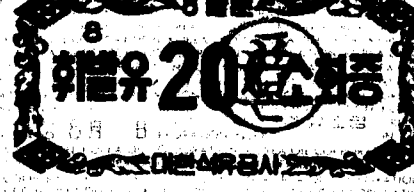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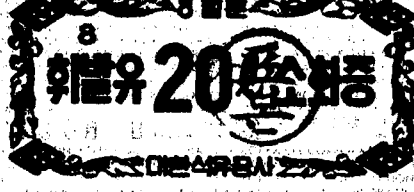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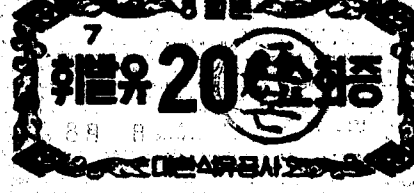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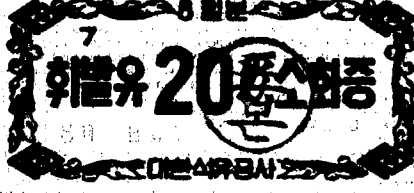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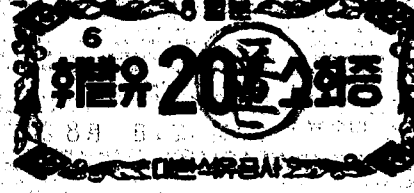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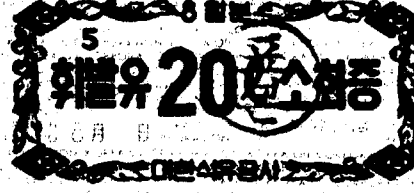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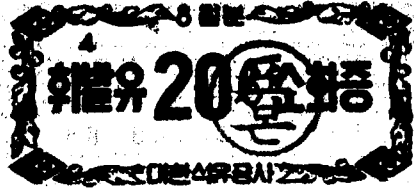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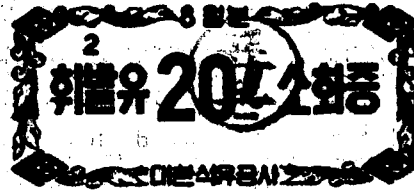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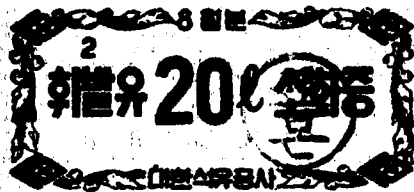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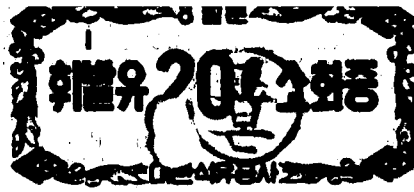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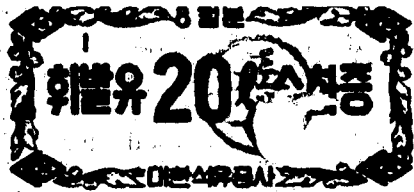


수신서. 4 (1.2.3.4.5.6.7.8.9.10.11)

82



73



揮發油測定器檢本

揮發油測定器檢本 ¹⁰⁰

車種

車種

本車種是 1949年 8月 至 揮發油測定器檢本

測定器檢本 以後 是 檢本

1949年 月 日

地方果實

1. 每月測定器檢本 更 檢本

2. 文字是 黑 色 是 檢本

3. 數字表示 斗 之 數字 (斗) 是 白 色 是 檢本